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
- 나. 의안번호: 제2277호
- 다. 제출일자: 2024.10.16.
- 라. 회부일자: 2024.10.18.

2. 제 안 사 유

-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,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'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.
- 제326회 임시회 당시 20,000백만원 출자 동의를 기 완료하였으나 금번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 누수사고('24.9.13.)의 추가 대책 마련 및 노후 열수송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추가 출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가. 출자 변경 개요

- 대상: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
- 출자규모: 24,000백만원 출자
 - (기존) 20,000백만원 → (변경) 24,000백만원
 - ※ 제326회 임시회 20,000백만원 출자 동의 완료

〈서울에너지공사 연도별 추진(예정) 현황〉

(단위: 억원)

구 분	소 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
당초 계획	659	59	200	140	200	60
변경 계획	699	59	200	140	240	60

나. 출자 필요성

-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.
- 특히, 목동 공동구 노후 배관은 '87년에 준공된 대형 열수송관으로 사고 시 대규모 열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체계 개선 시급.
- 노후 열수송관 관리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을 변경하여 출자하고자 함.
 - '25년 노후 열수송관 교체 : 214억원
 - ※ 제326회 임시회 출자 동의 200억원
 - 공동구 노후 열수송관 파손 대책 : 26억원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.

② <생략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「지방공기업법」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~ ③ <생략>

나. 예산조치: '25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공동구 주변 열수송관 누수사고 대응을 위해 2025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금액을 당초 20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지난 제326회 임시회 시 2025년도 노후 열수송관(6.1km) 교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었고, 우리 위원회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.
-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출자 동의 이후 목동 공동구²⁾ 주변에서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('24.9.13), 이에 따른 공동구 열수송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에 기인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음.
- 세부적으로 공동구³⁾ 내 차수관(4억원) 및 감시센서(10억원) 설치, 공동구 신축이음(20억원) 보강 및 주변 열수송관 센서(4억원) 설치, 서남 지역 환상망⁴⁾ 기본구상 용역(2억원) 수행을 위하여 총 4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) 목동 아이스링크 앞

3) 공동구: 전기·가스·수도 등의 통신시설,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하기 위한 시설

4) 환상망 : 열수송관 이중망(우회망)으로 설치 시 열공급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음

〈서울에너지공사 추가 출자 세부 계획〉

구 분	금 액	내 용	비 고
공동구 내 차수관 설치	4억원	온수의 공동구 내부 유입 차단	연내 설치
공동구 내 감지센서 설치	10억원	공동구 실시간 감지 센서 설치	
공동구 신축이음 보강	20억원	공동구 내 신축이음 부분 보강	
공동구 주변 열수공관 센서 설치	4억원	공동구 주변 열수공관 센서 설치	
서남지역 환상망 기본구상 용역	2억원	서남지역 우회망 설치 기본구상	

- 다만, 공동구 내 차수관 및 센서 설치의 경우 시급성을 사유로 금년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예산을 집행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예산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할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.

또한, 본 출자 변경 동의안에는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45)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, 규정에 맞게 동의안이 작성·제출되어야 할 것임.

- 한편,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('87년 부설)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등급과 무관하게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바,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미치는 과급력을 감안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시설 정비가 필요할 것임.

5) 제22조의4(출자·출연 동의안)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·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3. 생략
4. 출자·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6. ~ 8. 생략